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오케이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23. 5.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①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회사는 자체적인 유동성 관리지표를 활용하여 부채상환능력 등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유동성 관리지표가 회사의 가용 유동성 현황을 적절히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1], 유동성차입부채비중이 관리지표를 초과[2]하거나 조기경보지표 상 이상징후가 포착[3]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업무가 미흡하므로

1) 회사는 이미 만기가 연장되어 유동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대출 등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유동성비율”을 계산

2) 관리지표(☆% 이내)를 2022.2분기 및 3분기에 초과(각각 ☆% 및 ☆%)

3) 회사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초과하거나 전월대비 신규조달금리가 ☆bp이상 상승하는 등 이상징후를 2022년 2분기 및 3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앞으로 유동성 관리지표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2022년말 기준 총 영업자산 대비 부동산금융의 비중이 ☆%에 달하는 등 회사 대출자산이 부동산·건설업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데도 여신한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특정 업종으로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4장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하나

부동산PF대출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회사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 ① 사후관리 항목 및 주기 ② 관리대상 사업장 선정 및 관리대상 사업장 손실 최소화 대응방안 등 마련·보고 ③ 부동산 PF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기 분석·점검 ④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른 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각 단계별 기준 및 절차

부동산PF대출 사후관리 대상에 고위험 브릿지론 등*을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취합·관리하지 않는 등 브릿지론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2022말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 ☆조 ☆억원은 본PF ☆억원(☆%), 브릿지론 등(브릿지론 성격 토지담보대출 포함) ☆조 ☆억원(☆%)으로 구성

** 토지매입률(금액, 면적 기준), 인허가 진행상황(최초 인허가일자, 변경일자, 변경사유), 시공사 선정 현황(예상 도급계약일자) 등

분기별 PF사업성 평가 시 개별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분양지연(본PF 사업장) 및 연체여부(브릿지론 사업장)만으로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PF사업장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PF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내규를 정비하고, 사업성 평가기준을 포함한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부동산PF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4장

(2)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 미흡

내규「대손충당금 적립지침」제5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의하면 대손충당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부도율 및 부도 후 손실율을 고려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규상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등을 참고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부도율 및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경험손실율 및 부실전이율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외부 자료*를 차용하고 있으며

*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전체기업의 평균부도율 등을 일괄 적용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부동산PF대출은 개별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PF사업성 평가결과가 '보통' 이하인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집합평가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산출하고 신용위험의 유의적 변동에 따른 평가업무를 충실히 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대손충당금 적립지침」제5조, 제7조 및 제8조
2.「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9조 및 별표1